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59
----------	-------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배진교 · 민병덕 · 장혜영
강은미 · 허종식 · 박찬대
이은주 · 강성희 · 심상정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인구 감소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고,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및 지역경제 붕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운영되면서 은행의 이익을 지역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배제를 해소하며,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지역공공은행에 적용하되, 「은행법」에 따른 인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등은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 다. 자본금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함(안 제8조).
- 라. 지역공공은행에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은행감독위원회를 두고,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지방의회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은행감독위원회 내에 감사 소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 마.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개인 이용자로부터는 은행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함),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5조).

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리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 지급하는 원리금의 한도 등에 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을 준용함(안 제26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을 지도·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3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역공공은행”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지역공공은행은 그 명칭 중에 “공공은행”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역공공은행이 아닌 자는 공공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지역공공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지역공공은행에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동일인 주식보유한도의 특례) 「은행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역공공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업무구역) 지역공공은행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정치 관여 금지) 지역공공은행은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자본금) ①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업무구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2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도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2. 업무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인 경우: 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군·구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② 지역공공은행은 제1항 각 호 후단에 따른 출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9조(정관) ①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은행감독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지역공공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은행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등기) ① 지역공공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장 은행감독위원회

제11조(은행감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① 지역공공은행에 그 운영이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는지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운영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은행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

다.

1. 사업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은행감독위원회의 구성) ① 은행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공공은행의 임직원은 해당 지역공공은행의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공공주택
2. 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3. 여성·장애인 운영 중소기업
4. 지역금융
5. 노동·농업·소상공업
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7. 공공의료 및 사회서비스
8. 금융·감사·회계·재무

④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⑥ 은행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등) ①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은행감독위원회 내 소위원회) ① 지역공공은행은 은행감독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출 및 지속가능성 소위원회

2. 윤리 및 공정성 소위원회

3. 지역 활동 소위원회

4. 감사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출 및 지속가능성 소위원회는 대출 우선순위 및 금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은행의 대출정책에 대하여 자문한다.

④ 윤리 및 공정성 소위원회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평가한다.

⑤ 지역 활동 소위원회는 지역사회 영향력에 대한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평가한다.

제15조(감사 소위원회) ① 감사 소위원회는 내부통제기능을 포함한 이 사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제39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한다.

② 감사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 소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3명은 상근 위원이어야 하고,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상근 감사위원의 겸직 제한 및 승인에 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근 임원”은 “상근 감사위원”으로 본다.

④ 감사위원 후보는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재적 위

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6조(임원) ①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를 둔다.

②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6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지역공공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③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1. 금융 및 경제정책
2. 「은행법」에 따른 지방은행의 운영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금융기관의 운영
4.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5.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노동·농업·시민사회단체 활동
6. 사회적경제 정책
7.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 정책

④ 이사회는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되, 이 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에는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이 최대 2인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의 표결권은 없다.

제19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은행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은행감독위원회가 임면한 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 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21조(직원의 임면) 지역공공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역공공은행의 임원 및 은행감독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업무

제23조(업무) ① 지역공공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2. 취약계층 자금 지원
3. 사회연대경제 사업 금융 지원
4. 기후위기 대응 사업 금융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금융 지원
6. 청년정책 금융 지원
7. 그 밖에 금융배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지역공공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

2.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의 응모·인수 및 투자

4.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
는 자금 조달

가. 예금·적금의 수입. 다만, 개인 이용자로부터의 예금·적금의
수입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 은행감독위원회가 해당 지역공공은행의 건전성 및 지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나. 지역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라. 외국자본의 차입

6. 내국환·외국환 업무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판매
대행점의 업무.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공
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8.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
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지역 금융정책 및 지역 금융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분석 등 용역의 제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의 부대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24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지역공공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지역공공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지역금융채권의 발행) ① 지역공공은행은 제2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지역금융채권의 발행은 지역공공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지역금융채권의 발행액, 지역공공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지역공공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지역금융채권의 현재액
 2.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지역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 ④ 지역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예금채무 원리금 지급)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의 계산 및 한도에 관하여는 「예금자보호법」 제32조를 준용하되, “공

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보험금”은 “원리금”으로 본다.

제27조(금지업무) 지역공공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지역공공은행의 임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지역공공은행의 은행감독위원회 위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제5장 회계 및 자산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지역공공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은행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공공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은행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9조(이익금의 처리) ① 지역공공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0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 후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제30조(손실금의 보전) 지역공공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지역공공은행은 제2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32조(재산 소유의 제한) 지역공공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6장 감독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역공공은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공공은행의 은행감독위원회와 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지역공공은행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검사 결과, 지역공공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35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 요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

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공공은행 또는 은행감독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공공은행 또는 은행감독위원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 또는 은행감독위원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역공공은행 또는 은행감독위원회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 지역공공은행의 업무 또는 은행감독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지역공공은행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공공은행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지역공공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역공공은행은 이를 해당 임직원

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38조(경영공시) 지역공공은행은 대통령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외부 감사) ① 지역공공은행은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은행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경영건전성 기준) ① 지역공공은행은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① 지역공공은행의 임직원이 자금을 지역공공은행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지역공공은행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역공공은행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 제27조의 금지업무를 한 경우
3. 제29조를 위반하여 순이익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를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으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③ 제7조를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으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지역공공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지역공공은행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지역공공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8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한 자

5. 은행감독위원회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